

7. 法人稅法中改正法律(案)立法豫告

財務部公告 第1993-50號, 1993. 9. 2

1. 개정취지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과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여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법인세 중간예납기한을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연장조정하여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여 납세편의를 증진하고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마찰의 소지를 해소하는 한편,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인세율을 다음과 같이 하향조정함

구 분	현 행	개정(안)
0과세표준금액1억원이하분	20%	18%
0과세표준금액1억원초과분	34%	32%

나. 기업이익을 내부유보하여 기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공제 수준을 현행 배당가능이익의 40%에서 자본금의 10% 또는 배당가능 이익의 50%중 큰 금액으로 하고 세율도 현행 25%에서 15%로 하향조정 함.

다. 법인세 중간예납기한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여 기업자금부담을 완화함.

라. 중소기업 법인에 대하여는 접대비 기초금액을 현행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접대비 손금산입한도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함.

마. 손익의 인식시기와 비용의 기간배분 등에 대해 기업회계와 달리 정하고 있는 일부 세법규정을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조정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마찰소지를 해소함.

(1)선수금을 받고 그에 상당하는 재고 상품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매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간주매출제도를 폐지함.

(2)현재는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판매로 구분하여 부불금 회수일에 손익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할부판매로 통합하여 부불기간이 1년미만인 단기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상품의 인도일에 손익을 인식하고, 부분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 할부판매의 경우는 현재와 같이 부불금 회수일에 손익을 인식토록 함.

(3)출자자인 임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4)손익을 인식함에 있어서 지급이자는 이자지급일에 관계없이 발생주의에 의하여 기간경과분을 계산하여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5)기업회계기준이나 상법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세법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고정자산에 대한 임의평가제도를 폐지함.

바. 행정쇄신 차원에서 세법상의 각종의 무불이행시 부과되는 가산세를완화함.

(1)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과소신고가산세에 있어서 증과소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폐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10%)로 단일화 함.

(2)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용되는 대차대조표 무공고 가산세율을 현행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중 큰 금액에서 산출세액의 1% 또는 수입금액의 0.004%중 적은 금액으로 인하 함.

(3)액면가액 500만원이하의 공모설립법인 및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을 면제하고, 주식이동상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율도 현재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중 큰 금액에서 미제출 주식액면가액의 1%로 조정함.

사. 기업자금이 주주등 특수관계인의 사 적용도로 유출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현재는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만 가지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이자를 손금 불산입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차입금 비율에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금에 상당하는 차입금 이자는 모두 손금불산입토록 함.

아. 법인이 납세지를 변경하는 경우 현재

는 변경전 및 변경후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납세지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변경후 관할세무서장에게만 신고하면 되도록 납세지변경신고 절차를 간소화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3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할 것)를 재무부장관(참조: 법인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